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176호 2021. 6. 11.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00호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101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5

공 고

-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16호 삼척농림어업인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6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9,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1 - 100호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폐지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6. 11.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문의재로 2099 외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상마읍리 62-2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문의제로2099	20210611	가설건축물	20090904	자연지명명칭 반영(문의제)
2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문의제로 2095	폐 지	20210611	철 거	20090904	자연지명명칭 반영(문의제)
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44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704	20210611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명 (옥원,이천) 복합활용
4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146-1, 148-3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덕풍길 1047	20210611	신축건물	20090626	지역지명,지형지물 (덕풍계곡) 명칭활용
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3-1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길 91	20210611	기존건물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6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581 (정상동)	강원도 삼척시 정라사거리길 73 (정상동)	20210611	건물신축으로 인한 출입구 변경	20090626	인근지형지물 (사거리) 명칭활용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폐지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부여	폐지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삼마들리 62-2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문의제로 2099		2021.06.11	가설건축물	2009.09.04	자연지명명칭 반영(문의제)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문의제로 2095	폐지		2021.06.11	철거	2009.09.04	자연지명명칭 반영(문의제)	폐가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진리 44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704		2021.06.11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 이천)복합활용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146-1, 148-3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덕풍길 1047		2021.06.11	신축건물	2009.06.26	지역지명, 지형지물(덕풍계곡)명칭활용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3-1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길 91		2021.06.11	기존건물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581 (정상동)	강원도 삼척시 정리사거리길 73 (정상동)		2021.06.11	건물신축으로 인한 출입구 변경	2009.06.26	인근지형지물(사거리)명칭활용	

삼척시 고시 제2021-101호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교통 종합스포츠타운(체육시설1) 조성과 관련하여 확장이 추진된 소로2-14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삼척시장

가. 계획취지

- 「국토계획법」 제2항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나.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4	14~18	집산도로	752	광장2 교동 721	소로2-131 교동 720-8	일반도로	종합스포츠타운	2001. 7.13. (강원도고시 제132호)	최근고시: 2021. 1. 8. (삼척-2)
변경	중로	2	14	14~18	집산도로	752	광장2 교동 721	소로2-131 교동 720-8	일반도로	종합스포츠타운		뒷나루길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2-14호선	중로2-14호선	• 일부구간 선형 변경	- 종합스포츠타운(체육시설1) 조성사업(2020.12.31. 준공) 관련 도로 확장 구간으로 최종 설계를 반영한 선형 변경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다.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도 및 지형도면: 별도 첨부

라. 본 고시와 관계된 서류는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6)에 비치하며,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1-13 호

「삼척시농림어업인대상 조례」 외 1건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 일
삼척시장

삼척농림어업인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가. 삼척시농림어업인 대상조례
- 나. 삼척시농림어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2. 제안이유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의 명칭을 삼척시 농업인 대상으로 변경하고, 농업인상의 분야별 수상을 지양하고, 대상 1명만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대상의 품격 및 권위를 향상하여 삼척시 농업인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농업인상 재정립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삼척시농림어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 조례 제명 변경
 - 기존 :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 조례」
 - 변경 : 「삼척시 농업인 대상 조례」
- 나. 농업인의 정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 다. 수상부문과 인원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4조)
 - 4개부문 각 1명 → 대상 1명으로 통합
- 라. 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 마. 수상제외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심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2조)
 - 당초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
 - 위원회의 소집 및 수상자의 의결에 관한 사항
 - 위원임기 및 간사에 관한 사항
- 사. 현지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아. 시상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11월 중에 시상
- 자. 수상자에 대한 우대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안 제17조)

2)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가. 규칙 제명 변경
 - 기존 : 「삼척시 농림어업인 대상 시행규칙」
 - 변경 : 「삼척시 농업인 대상 조례 시행규칙」
- 나.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다. 심사 방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 농업기술센터(농정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근덕면 맹방 해변로49(삼척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전화 : 033-570-3380
- FAX : 033-570-3142
- E-mail : lsw1391@korea.kr

5.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광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 조례 전개정조례안 1부.
2. 삼척시농림어업인 대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붙임 1]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 조례 전부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 농업인 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고품질화·기술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진 농촌건설 및 농업소득증대에 기여한 농업인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상의 명칭) 이 상(賞)의 명칭은 삼척시 농업인 대상(이하 “농업인 대상”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4조(시상 인원) 매년 한 명의 개인 또는 한 개의 단체로 한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시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농업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농업인: 농업 성장을 주도하고, 동일부문의 업종에 3년 이상 계속해서 종사하는 전문 농업인
2. 단체: 농업경영체를 조직하여 공동생산, 공동가공 및 공동유통 기능을

협동적으로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농업에 직접 참가하는 단체

② 농업을 대(代)를 이어 경영을 계승하는 농업인과 단체는 우대한다.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농업인 관련기관·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읍·면·동장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② 제1항의 추천에 필요한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상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조례에 따라 농업인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2.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4.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5.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6.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심의회 구성 등) ①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농업인 대상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농업지원과장,

미래농업과장, 축산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농·축산사업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 연도 심사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심의회 소집 및 의결) ① 수상자는 제7조에 따른 심의회에서 심사·결정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심사기준) 심의회는 제5조에 규정된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6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 심사서류 및 제14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정기획담당이 된다.

제14조(현지조사)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현지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11월 중에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16조(수상자의 우대)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에게는 영농자금, 농업사업 등 각종 사업선정 및 국내 연수대상자 선정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삼척시 농림어업인 대상은 이 조례에 따른 삼척시 농업인 대상으로 본다.

[붙임 2]

삼척시 규칙 제 호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삼척시 농림어업인 대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 농업인 대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농업인 대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삼척시 농업인 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춘 후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 1부
3.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관련 사진, 신문 기사, 작업·연구일지 등을 말한다)

제3조(심사 방법 및 수상자 결정) ① 수상후보자 심사는 참석위원 모두가 심사하며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② 수상후보자가 결정되면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사 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삼척시 농업인 대상

추천서

① 인적 사항 (단체개요)	주소 (소재지)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별			

② 추천사유				
--------	--	--	--	--

위 사람을 ○○○○년도 삼척시 농업인 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장 (직인)

삼척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 1부
- 2.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붙임 1]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삼척시농림어업인 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농림어업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검토의견서	
	수정안	검토사유